|  |  |  |
| --- | --- | --- |
|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64호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이 본 국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田力普  2012년 3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허 및 실용신안 전리(專利)를 실시하는 강제허가(이하 강제허가라 함) 부여, 비용재결 및 종료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리(專利)법》(이하 전리(專利)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전리(專利)법 실시세칙》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 강제허가 사용료의 재결청구 및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수리, 심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3조** 강제허가 부여,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또는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 시에는 중문을 사용하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방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 증명문건이 외국어로 된 경우 국가재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중문 번역문을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증서,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중국에 정상적인 거소가 없거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강제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여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의뢰하여 강제허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기한을 밝혀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2개 이상인 동시에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성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출한 서면문건에서 지명한 제1 당사자가 그 대표자로 된다.  **제2장 강제허가 청구의 제출과 수리**  **제5조** 전리(專利)권자가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만 3년이고 전리(專利)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만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전리(專利)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나 개인은 전리(專利)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리(專利)권자의 전리(專利)권 행사 행위가 법에 의해 독과점행위로 인정된 경우 경쟁에 미치는 당해 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나 개인은 전리(專利)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에 긴급사태나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유관주관부서는 전리(專利)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그가 지정한,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에 강제허가를 부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실시조건이 구비된 단위는 전리(專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專利)권을 취득한 약품을 제조하여 아래의 국가나 지역에 수출하는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1) 후진국 또는 지역  (2)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WTO에 통지하여 수입자로 되기를 원하는 WTO의 선진회원국이나 발전도상 회원국  **제8조** 전리(專利)권을 취득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전리(專利)권을 이미 취득한 특허나 실용신안보다 현저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대 기술진보가 있으나 그를 실시하려면 이전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당해 전리(專利)권자는 전리(專利)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전리(專利)의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이전 전리(專利)의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경우 기존 전리(專利)권자도 이후 전리(專利)의 강제허가 실시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허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인 및 전화  (2) 청구인의 국적 또는 등록한 국가나 지역  (3)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수권공고일, 그리고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4)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이유와 사실, 기한  (5) 청구인이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 기구가 지정한 변리사의 성명, 직업증서 번호, 연락전화  (6)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직인을 별도 날인  (7) 첨부파일 리스트  (8) 설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청구서 및 그 첨부파일은 1식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강제허가 청구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전리(專利)권자와 관련되는 경우 청구인은 전리(專利)권자 수에 따라 청구서와 첨부파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전리(專利)법 제48조 제(1)호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그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리(專利)권자에게 그 전리(專利)실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전리(專利)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사법기관 또는 반독과점 법 집행기관이 법에 의해 전리(專利)권자의 전리(專利)권 행사 행위를 독과점 행위로 인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에서 전리(專利)법 제49조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밟혀야 한다.  (1) 국가에 긴급사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강제허가 부여가 필요  (2) 강제허가 부여를 건의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 번호, 출원일, 수권공고일,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3) 건의하는 강제허가 부여기한  (4) 실시조건을 구비하는 지정 단위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인 및 전화  (5) 밝힐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제13조** 전리(專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수입자 및 그에 필요한 약품과 강제허가 부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강제허가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전리(專利)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 서류가 중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강제허가 청구 이유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경우  (4)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한 전리(專利)권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또는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제15조** 청구서류가 이 방법 제4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강제허가 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부본을 전리(專利)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리(專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강제허가 청구의 심사와 결정**  **제17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구인이 진술한 이유와 제공한 정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그리고 전리(專利)권자가 진술한 의견을 심사해야 하며,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업무요원을 지명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청구인이나 전리(專利)권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문을 개최하는 7일 전에 청구인, 전리(專利)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 진행한다.  청문을 소집하는 경우 청구인, 전리(專利)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변호와 대질을 할 수 있다.  청문회를 소집 시에는 청문기록을 작성하여 청문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리(專利)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건의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청구인이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한 경우 강제허가 청구의 심사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과 전리(專利)권자가 전리(專利)실시 허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그 강제허가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제20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방법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이유가 전리(專利)법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강제허가 청구와 관련되는 특허가 반도체기술이며, 그 이유가 전리(專利)법 제5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강제허가 청구가 이 방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청구인이 진술한 이유,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 기각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21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한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해야 하며, 강제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과 전리(專利)권자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쌍방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리(專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하기 전에 전리(專利)권자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2) 강제허가 부여대상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및 수권공고일  (3) 강제허가를 부여한 범위와 기한  (4) 결정한 이유, 사실 및 법률적 근거  (5)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날인 및 책임자의 서명  (6) 결정 일자  (7)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결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청구인과 전리(專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전리(專利)법 제50조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중에 아래의 요구를 명확히 밟혀야 한다.  (1) 강제허가에 의거하여 제조한 약품 수량은 수입자의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전량을 당해 수입자에게 수출해야 한다.  (2) 강제허가에 의거하여 제조한 약품은 특정 라벨이나 마크를 사용하여 당해 약품이 강제허가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밝혀야 하며, 약품 가격에 현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약품 자체에 특수한 칼라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약품에 특수한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3) 약품을 선적하기 전에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는 그 홈페이지나 WTO의 관련 홈페이지에 수입자에게 운송하는 약품의 수량과 이 조 제(2)호에서 서술한 약품의 식별특징 등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ㅣ  **제24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전리(專利)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는 아래의 정보를 WTO에 통보한다.  (1)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수입 약품의 명칭과 물량  (3) 수입자  (4) 강제허가 기한  (5) 이 방법 제23조 제(3)호에서 서술한 홈페이지.  **제4장 강제허가 사용료의 재결청구 심사와**  **재결**  **제25조**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청구인의 국적이나 등록한 국가 또는 지역  (3) 강제허가 부여 결정번호  (4) 피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5)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을 청구하는 이유  (6) 청구인이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는 수임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 기구가 지명한 변리사의 명칭, 직업증서 번호, 연락전화  (7)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직인을 별도 날인  (8) 첨부파일 리스트  (9) 밝힐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청구서 및 첨부파일은 1식 2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6조**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 강제허가 부여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경우  (2) 청구인이 전리(專利)권자 또는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이 아닌 경우  (3) 쌍방이 아직 협상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협상을 거쳤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27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답변이 없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사건 경위의 필요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구두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 청구인이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결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재결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제29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30조**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2) 강제허가 부여대상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및 수권 공고일  (3) 재결 내용과 이유  (4)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날인 및 책임자의 서명  (5) 결정 일자  (6)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내에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장 강제허가 종료 청구의 심사와**  **결정**  **제3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허가는 스스로 종료된다.  (1) 강제허가 부여 결정에서 규정한 강제허가 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강제허가 부여대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종료되었거나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제32조** 강제허가 부여 결정에서 규정한 강제허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허가 이유가 제거되고 또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리(專利)권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강제허가를 종료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허가 종료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전리(專利)권자의 국적이나 등록 국가 또는 지역  (3) 종료를 청구하는 강제허가 부여 결정번호  (4)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하는 이유와 사실  (5) 전리(專利)권자가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 기구가 지명한 변리사의 성명, 직업증서 번호, 연락전화  (6) 전리(專利)권자의 서명이나 날인,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직인을 별도 날인  (7) 첨부파일 리스트  (8) 밝힐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청구서 및 그 첨부파일은 1식 2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 강제허가 종료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 청구인이 강제허가를 부여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전리(專利)권자가 아닌 경우  (2) 강제허가 부여 종료를 청구하는 결정 번호를 밝히지 않은 경우  (3) 청구문건에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강제허가 종료 이유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제34조** 청구문건이 이 방법 제3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정을 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부본을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리(專利)권자의 진술 이유와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그리고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진술의견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실사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 업무요원을 지명하여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전리(專利)권자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관련 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제38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기각하며,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기각하기 전에 전리(專利)권자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리(專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39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3) 강제허가를 부여받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및 수권 공고일  (4) 강제허가 부여 결정의 문건번호  (5) 결정 사실과 법률적 의거  (6)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날인 및 책임자의 서명  (7) 결정 일자  (8)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 종료 결정은 결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전리(專利)권자와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40조** 이미 효력을 발생한 강제허가 부여 결정과 강제허가 종료 결정, 그리고 강제허가가 스스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리(專利)등록부에 등재하고 전리(專利)공고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당사자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강제허가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3조** 이 방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6월 13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31호로 반포한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과 2005년 11월 29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37호로 반포한 《공공 건강문제와 관련되는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  国家知识产权局令第 六十四 号  　　《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已经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5月1日起施行。  　　　　　　　　　　　　　　　　　　　　　 　　 局长　 田力普　　　　　　　　　　　　　　　　　　　 　 二○一二年三月十五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以下简称强制许可）的给予、费用裁决和终止程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以下简称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及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知识产权局负责受理和审查强制许可请求、强制许可使用费裁决请求和终止强制许可请求并作出决定。  **第三条**　请求给予强制许可、请求裁决强制许可使用费和请求终止强制许可,应当使用中文以书面形式办理。  　　依照本办法提交的各种证件、证明文件是外文的，国家知识产权局认为必要时，可以要求当事人在指定期限内附送中文译文；期满未附送的，视为未提交该证件、证明文件。  **第四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办理强制许可事务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当事人委托专利代理机构办理强制许可事务的，应当提交委托书，写明委托权限。一方当事人有两个以上且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除另有声明外，以提交的书面文件中指明的第一当事人为该方代表人。  **第二章　强制许可请求的提出与受理**  **第五条**　专利权人自专利权被授予之日起满3年，且自提出专利申请之日起满4年，无正当理由未实施或者未充分实施其专利的，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可以根据专利法第四十八条第一项的规定，请求给予强制许可。  　　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被依法认定为垄断行为的，为消除或者减少该行为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可以根据专利法第四十八条第二项的规定，请求给予强制许可。  **第六条**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可以根据专利法第四十九条的规定，建议国家知识产权局给予其指定的具备实施条件的单位强制许可。  **第七条**　为了公共健康目的，具备实施条件的单位可以根据专利法第五十条的规定，请求给予制造取得专利权的药品并将其出口到下列国家或者地区的强制许可：  　　（一）最不发达国家或者地区；  　　（二）依照有关国际条约通知世界贸易组织表明希望作为进口方的该组织的发达成员或者发展中成员。  **第八条**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该专利权人可以根据专利法第五十一条的规定请求给予实施前一专利的强制许可。国家知识产权局给予实施前一专利的强制许可的，前一专利权人也可以请求给予实施后一专利的强制许可。  **第九条**　请求给予强制许可的，应当提交强制许可请求书，写明下列各项：  　　（一）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邮政编码、联系人及电话；  　　（二）请求人的国籍或者注册的国家或者地区；  　　（三）请求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名称、专利号、申请日、授权公告日，以及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  　　（四）请求给予强制许可的理由和事实、期限；  　　（五）请求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受托机构的名称、机构代码以及该机构指定的代理人的姓名、执业证号码、联系电话；  　　（六）请求人的签字或者盖章；委托专利代理机构的，还应当有该机构的盖章；  　　（七）附加文件清单；  　　（八）其他需要注明的事项。  　　请求书及其附加文件应当一式两份。  **第十条**　强制许可请求涉及两个或者两个以上的专利权人的，请求人应当按专利权人的数量提交请求书及其附加文件副本。  **第十一条**　根据专利法第四十八条第一项或者第五十一条的规定请求给予强制许可的，请求人应当提供证据，证明其以合理的条件请求专利权人许可其实施专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得许可。  　　根据专利法第四十八条第二项的规定请求给予强制许可的，请求人应当提交已经生效的司法机关或者反垄断执法机构依法将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认定为垄断行为的判决或者决定。  **第十二条**　国务院有关主管部门根据专利法第四十九条建议给予强制许可的，应当指明下列各项：  　　（一）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或者为了公共利益目的需要给予强制许可；  　　（二）建议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名称、专利号、申请日、授权公告日，以及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  　　（三）建议给予强制许可的期限；  　　（四）指定的具备实施条件的单位名称、地址、邮政编码、联系人及电话；  　　（五）其他需要注明的事项。  **第十三条**　根据专利法第五十条的规定请求给予强制许可的，请求人应当提供进口方及其所需药品和给予强制许可的有关信息。  **第十四条**　强制许可请求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受理并通知请求人：  　　（一） 请求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专利号不明确或者难以确定；  　　（二）请求文件未使用中文；  　　（三）明显不具备请求强制许可的理由；  　　（四）请求给予强制许可的专利权已经终止或者被宣告无效。  **第十五条**　请求文件不符合本办法第四条、第九条、第十条规定的，请求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进行补正。期满未补正的，该请求视为未提出。  **第十六条**　国家知识产权局受理强制许可请求的，应当及时将请求书副本送交专利权人。除另有指定的外，专利权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期满未答复的，不影响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  **第三章　强制许可请求的审查和决定**  **第十七条**　国家知识产权局应当对请求人陈述的理由、提供的信息和提交的有关证明文件以及专利权人陈述的意见进行审查；需要实地核查的，应当指派两名以上工作人员实地核查。  **第十八条**　请求人或者专利权人要求听证的，由国家知识产权局组织听证。  　　国家知识产权局应当在举行听证7日前通知请求人、专利权人和其他利害关系人。  　　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外，听证公开进行。  　　举行听证时，请求人、专利权人和其他利害关系人可以进行申辩和质证。  　　举行听证时应当制作听证笔录，交听证参加人员确认无误后签字或者盖章。  　　根据专利法第四十九条或者第五十条的规定建议或者请求给予强制许可的，不适用听证程序。  **第十九条**　请求人在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前撤回其请求的，强制许可请求的审查程序终止。  　　在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前，请求人与专利权人订立了专利实施许可合同的，应当及时通知国家知识产权局，并撤回其强制许可请求。  **第二十条**　经审查认为强制许可请求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作出驳回强制许可请求的决定：  　　（一）请求人不符合本办法第四条、第五条、第七条或者第八条的规定；  　　（二）请求给予强制许可的理由不符合专利法第四十八条、第五十条或者第五十一条的规定；  　　（三）强制许可请求涉及的发明创造是半导体技术的，其理由不符合专利法第五十二条的规定；  　　（四）强制许可请求不符合本办法第十一条或者第十三条的规定；  　　（五）请求人陈述的理由、提供的信息或者提交的有关证明文件不充分或者不真实。  　　国家知识产权局在作出驳回强制许可请求的决定前，应当通知请求人拟作出的决定及其理由。除另有指定的外，请求人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  **第二十一条**　经审查认为请求给予强制许可的理由成立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作出给予强制许可的决定。在作出给予强制许可的决定前，应当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拟作出的决定及其理由。除另有指定的外，双方当事人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  　　国家知识产权局根据专利法第四十九条作出给予强制许可的决定前，应当通知专利权人拟作出的决定及其理由。  **第二十二条**　给予强制许可的决定应当写明下列各项：  　　（一）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的名称或者姓名、地址；  　　（二）被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名称、专利号、申请日及授权公告日；  　　（三）给予强制许可的范围和期限；  　　（四）决定的理由、事实和法律依据；  　　（五）国家知识产权局的印章及负责人签字；  　　（六）决定的日期；  　　（七）其他有关事项。  　　给予强制许可的决定应当自作出之日起5日内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  **第二十三条**　国家知识产权局根据专利法第五十条作出给予强制许可的决定的，还应当在该决定中明确下列要求：  　　（一）依据强制许可制造的药品数量不得超过进口方所需的数量，并且必须全部出口到该进口方；  　　（二）依据强制许可制造的药品应当采用特定的标签或者标记明确注明该药品是依据强制许可而制造的；在可行并且不会对药品价格产生显著影响的情况下，应当对药品本身采用特殊的颜色或者形状，或者对药品采用特殊的包装；  　　（三）药品装运前，取得强制许可的单位应当在其网站或者世界贸易组织的有关网站上发布运往进口方的药品数量以及本条第二项所述的药品识别特征等信息。  **第二十四条**　国家知识产权局根据专利法第五十条作出给予强制许可的决定的，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将下列信息通报世界贸易组织：  　　（一）取得强制许可的单位的名称和地址；  　　（二）出口药品的名称和数量；  　　（三）进口方；  　　（四）强制许可的期限；  　　（五）本办法第二十三条第三项所述网址。  **第四章　强制许可使用费裁决请求的**  **审查和裁决**  **第二十五条**　请求裁决强制许可使用费的，应当提交强制许可使用费裁决请求书，写明下列各项：  　　（一）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请求人的国籍或者注册的国家或者地区；  　　（三）给予强制许可的决定的文号；  　　（四）被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五）请求裁决强制许可使用费的理由；  　　（六）请求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受托机构的名称、机构代码以及该机构指定的代理人的姓名、执业证号码、联系电话；  　　（七）请求人的签字或者盖章；委托专利代理机构的，还应当有该机构的盖章；  　　（八）附加文件清单；  　　（九）其他需要注明的事项。  　　请求书及其附加文件应当一式两份。  **第二十六条**　强制许可使用费裁决请求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受理并通知请求人：  　　（一）给予强制许可的决定尚未作出；  　　（二）请求人不是专利权人或者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  　　（三）双方尚未进行协商或者经协商已经达成协议。  **第二十七条**　国家知识产权局受理强制许可使用费裁决请求的，应当及时将请求书副本送交对方当事人。除另有指定的外，对方当事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期满未答复的，不影响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  　　强制许可使用费裁决过程中，双方当事人可以提交书面意见。国家知识产权局可以根据案情需要听取双方当事人的口头意见。  **第二十八条**　请求人在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前撤回其裁决请求的，裁决程序终止。  　　第二十九条　国家知识产权局应当自收到请求书之日起3个月内作出强制许可使用费的裁决决定。  **第三十条**　强制许可使用费裁决决定应当写明下列各项：  　　（一）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的名称或者姓名、地址；  　　（二）被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名称、专利号、申请日及授权公告日；  　　（三）裁决的内容及其理由；  　　（四）国家知识产权局的印章及负责人签字；  　　（五）决定的日期；  　　（六）其他有关事项。  　　强制许可使用费裁决决定应当自作出之日起5日内通知双方当事人。  **第五章　终止强制许可请求的审查和**  **决定**  **第三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强制许可自动终止：  　　（一）给予强制许可的决定规定的强制许可期限届满；  　　（二）被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终止或者被宣告无效。  **第三十二条**　给予强制许可的决定中规定的强制许可期限届满前，强制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的，专利权人可以请求国家知识产权局作出终止强制许可的决定。  　　请求终止强制许可的，应当提交终止强制许可请求书，写明下列各项：  　　（一）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专利权人的国籍或者注册的国家或者地区；  　　（三）请求终止的给予强制许可决定的文号；  　　（四）请求终止强制许可的理由和事实；  　　（五）专利权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受托机构的名称、机构代码以及该机构指定的代理人的姓名、执业证号码、联系电话；  　　（六）专利权人的签字或者盖章；委托专利代理机构的，还应当有该机构的盖章；  　　（七）附加文件清单；  　　（八）其他需要注明的事项。  　　请求书及其附加文件应当一式两份。  **第三十三条**　终止强制许可的请求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受理并通知请求人：  　　（一）请求人不是被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专利权人；  　　（二）未写明请求终止的给予强制许可决定的文号；  　　（三）请求文件未使用中文；  　　（四）明显不具备终止强制许可的理由。  **第三十四条**　请求文件不符合本办法第三十二条规定的，请求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进行补正。期满未补正的，该请求视为未提出。  **第三十五条**　国家知识产权局受理终止强制许可请求的，应当及时将请求书副本送交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除另有指定的外，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期满未答复的，不影响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  **第三十六条**　国家知识产权局应当对专利权人陈述的理由和提交的有关证明文件以及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陈述的意见进行审查；需要实地核查的，应当指派两名以上工作人员实地核查。  **第三十七条**　专利权人在国家知识产权局作出决定前撤回其请求的，相关程序终止。  **第三十八条**　经审查认为请求终止强制许可的理由不成立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作出驳回终止强制许可请求的决定。在作出驳回终止强制许可请求的决定前，应当通知专利权人拟作出的决定及其理由。除另有指定的外，专利权人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  **第三十九条**　经审查认为请求终止强制许可的理由成立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作出终止强制许可的决定。在作出终止强制许可的决定前，应当通知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拟作出的决定及其理由。除另有指定的外，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陈述意见。  　　终止强制许可的决定应当写明下列各项：  　　（一）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的名称或者姓名、地址；  　　（三）被给予强制许可的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名称、专利号、申请日及授权公告日；  　　（四）给予强制许可的决定的文号；  　　（五）决定的事实和法律依据；  　　（六）国家知识产权局的印章及负责人签字；  　　（七）决定的日期；  　　（八）其他有关事项。  　　终止强制许可的决定应当自作出之日起5日内通知专利权人和取得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  **附　则**  **第四十条**　已经生效的给予强制许可的决定和终止强制许可的决定，以及强制许可自动终止的，应当在专利登记簿上登记并在专利公报上公告。  **第四十一条**　当事人对国家知识产权局关于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四十二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四十三条**　本办法自2012年5月1日起施行。2003年6月13日国家知识产权局令第三十一号发布的《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和2005年11月29日国家知识产权局令第三十七号发布的《涉及公共健康问题的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同时废止。 |